

## 화순군오수·분뇨·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

###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## 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97. 2. 화순군수
- 나. 회부일자 : 97. 2.
- 다. 상정일자 : 97. 2. (제5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)

#### 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자 : 환경보호과장 김영열

나. 제안사유

- 분뇨 수집 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시 부당요금 징수 사례를 방지하여 주민의 불이익을 사전예방하고 수집 및 청소 대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요금인상 및 처리장의 분뇨 및 오니 반입신고와 청소한자에 대한 수수료 납부 고지서 발부 이행을 의무화 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영업자가 분뇨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반입시마다 "분뇨 반입 신고서"를 제출
- 분뇨 수집 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요금 인상
  - 분뇨 수집 수수료 - 20% 인상
  - 정화조 청소요금
    - 기본 : 5.6%인상
    - 초과 : 21%인상
- 영업자는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시마다 "수수료등 납입 고지서"를 청소한 자에게 납부고자함.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민 병 항)

- 본 조례 개정은 분뇨 수집 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시 부당요금 징수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집 및 청소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처리장 반입신고와 청소한자에게 수수료 납부 고지의 의무 및 요금인상조례 개정으로 화순군 물가대책 위원회 의결과 화순군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.

### 4. 질의 답변 요지

"생략"

### 5. 토론요지

"생략"

### 6. 심사결과

"원안가결"

첨 부 : 화순군오수.분뇨.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  
조례안 1부. 끝.

# 화순군오수·분뇨·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7 - 19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2. 18.

제출자 : 화순군수

## 1. 제안이유

- 분뇨수집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요금의 인상과 분뇨수집·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와 분뇨반입고지서 서식의 신설로 부당요금 징수사례를 미연에 방지코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분뇨관련 영업자는 분뇨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오니 반입시마다 "분뇨반입신고서"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안 제6조 제4항 신설 및 별지 제9호 서식 신설 삽입)
- 분뇨수집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요금 인상
  - 분뇨수집수수료 ————— 20% 인상
  - 정화조 청소요금
    - 기본 : 5.6% 인상
    - 초과 : 21% 인상

(안 제9조 제1항 제3호중 요금변경)
- 분뇨관련 영업자는 분뇨수집·운반 및 정화조 청소시마다 "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등 납부고지서"를 정화조등을 청소한자에게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.
 

(안 제9조 제1항 신설 및 별지 제9호서식 신설 삽입)

## 화순군오수·분뇨·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오수·분뇨·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분뇨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오니 반입시 마다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9조 제1항제3호중 "18리터당 18원씩"을 "별표1과 별표2에 해당한 처리비를"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. 사용료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정화조등을 청소한 자에게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 (분뇨의 수집·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)</p> <p>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(생략) <u>(신설)</u></p>	<p>제6조 (분뇨의 수집·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분뇨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반입시마다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
<p>제9조 (수수료·사용료의 부과징수)</p> <p>① 1. (생략) 2. (생략) 3. 분뇨처리비  위생환경사업소 (이하 "처리장"이라 칭한다)에서 위생처리하는 분뇨 및 오니처리비는 배출자로부터 18리터당 18원씩 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.</p>	<p>제9조 (수수료·사용료의 부과징수)</p> <p>①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분뇨처리비  위생환경사업소 (이하 "처리장"이라 칭한다)에서 위생처리하는 분뇨 및 오니처리비는 배출자로부터 "별표1"과 "별표2"에 해당한 처리비를 청소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.</p>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② (생략) <u>(신설)</u>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, 사용료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정화조등을 청소한 자에게 납부고자하여야 한다.</p>

&lt;현 행&gt;

## 【별표 1서식】

## 분뇨수집수수료요율표

(단위 : 원)

부과대상	부과기준	수거요금
계		123
수집·운반수수료	18ℓ 당	105
처리장사용료	18ℓ 당	18

## 【별표 2서식】

## 정화조청소요율표

(단위 : m<sup>3</sup>, 원)

구분	용량	계	청소수수료	처리장사용료
기본	0.75m <sup>3</sup>	6,550	5,800	750
초과	매 0.1m <sup>3</sup> 당	710	610	100

&lt;개정안&gt;

## 【별표 1서식】

## 분뇨수집 수수료율 표

(단위 : 원)

부과대상	부과기준	수거요금
계		148
수집·운반수수료	18ℓ 당	126
처리장사용료	18ℓ 당	22

## 【별표 2서식】

## 정화조청소요율 표

(단위 : m<sup>3</sup>, 원)

구분	용량	계	청소수수료	처리장사용료
기본	0.75m <sup>3</sup>	6,920	6,060	860
초과	매 0.1m <sup>3</sup> 당	860	740	120

## 【별지】 제9호 서식】

## 부 루 반 입 신 고 서

일련 번호	제 호	
반 입 금	제 래 식	미 회사 (인)
반 입 금	정 화 조	인수자 성명
인수자 성명	작	성 명
위와 같이 반입하고자 합니다.		
19 년 월 일		
화순군수 구하		

## 부 루 반 입 신 고 편 증

일련 번호	제 호	
반 입 금	제 래 식	미 회사 (인)
반 입 금	정 화 조	인수자 성명
인수자 성명	작	성 명
위와 같이 반입을 허락합니다.		
19 년 월 일		
화순군수 수		

## 【별지 제10호 서식】

분뇨수집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등 납부고지서(미화사보관용)		분뇨수집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등 납부고지서(미화사보관용)		분뇨수집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등 납부고지서(미화사보관용)	
제 호	제 호	제 호	제 호	제 호	제 호
성명 (상호)	성명 (상호)	성명 (상호)	성명 (상호)	성명 (상호)	성명 (상호)
주 소	주 소	주 소	주 소	주 소	주 소
구 분	구 분	구 분	구 분	구 분	구 분
재 래 식	재 래 식	재 래 식	재 래 식	재 래 식	재 래 식
수수료 및 처리량	수집반수 료처리 량	수집반수 료처리 량	수집반수 료처리 량	수집반수 료처리 량	수집반수 료처리 량
원 (ℓ)	원 (ℓ)	원 (ℓ)	원 (ℓ)	원 (ℓ)	원 (ℓ)
위와 같이 분뇨·정화조·오수 정화조 수집운반 및 청소수수료 등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	위와 같이 분뇨·정화조·오수 정화조 수집운반 및 청소수수료 등을 영수하였기 통보합니다.	위와 같이 분뇨·정화조·오수 정화조 수집운반 및 청소수수료 등을 영수하였습니다.	19년 월 일	19년 월 일	19년 월 일
미화사 (인)	미화사 (인)	미화사 (인)	미화사 화순군수 구하	미화사 화순군수 구하	미화사 화순군수 구하